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 번	안 호	378
--------	--------	-----

제출년월일 1994. 9. 17.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 개정사유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4317호 '94.7.6.)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일비 및 여비 지급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동시행령을 준용토록 하고 있는 지방
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의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국내여비 구분중 식탁료 삭제 (안 제5조제1항)
- 일비 지급기준 조정 (안 제6조)
 - 일비 (1일당) : 50,000원 → 60,000원
- 국내여비 지급기준 조정 (안 별표 1)
 - 현지교통비(1일당) : 4,500원 또는 5,000원 → 6,500원
 - 숙박비(1야당) : 15,000원 또는 17,000원 → 20,700원
 - 식비(1일당) : 9,500원 또는 11,000원 → 11,000원
 - 식탁료(1야당) : 800원 → 식탁료 삭제
- 국외여비 지급기준 조정 (안 별표 2)
 - 숙박비(1야당) : 40 ~ 133불 → 62 ~ 147불
 - 식비(1일당) : 33 ~ 58불 → 49 ~ 133불
 - 새로 수교된 국가(16개국)에 대한 국외여비 지급등급 지정

□ 개정근거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 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 4], [별표 5], [별표 6]
- 국외여비규정 [별표 2]

□ 조 례 안 : 덧붙임

□ 참고자료

-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 예산상황 : 소요액 8,616,000원을 '94.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심의·의결 공문서 사본 : 덧붙임
- 충청북도의회 부의안건 공고문 사본 : 덧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식탁료"를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

제6조중 "50,000"원을 "60,000원"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7월 6일부터 적용한다.

[표 1]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제7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현 금 지 출 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의장							
부의장	1등급	2 등 정액	정액	정액	6,500	20,700	11,000
위원							

비고)

1. 자동차 운임 및 항공운임 정액은 교통부장관의 인·허 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2. 철도운임 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